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일자 : 2006.11.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별표 1의2)
- 나.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에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에서 정함(안 별표 5)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8. 21 ~ 9. 21(31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기 타 : 표준 조례안 시달(시건축주택과-11875, 2006. 7. 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로 한다.

별표 1의 신규 교육 비고란의 “광고업 신고후” 를 “광고업 등록후” 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를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로 하고, “영 제41조제3항” 을 “영 제41조제5항” 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㉞옥외광고업신고번호” 를 “㉞옥외광고업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b>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①</b>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b>제33조 (수수료) ①</b>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②(생략)</p>	<p><b>제33조 (수수료) ①</b>-----</p> <p>-----</p> <p>-----</p> <p>-----</p> <p>-----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 [별표 1]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li>○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u>광고업 등록</u>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li> </ul>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 (대표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li> </ul>
기타교육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li> </ul>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0.8제곱미터 이하</li> <li>· 0.9~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3제곱미터 이하</li> <li>· 1.4~1.6제곱미터 이하</li> <li>· 1.7~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제곱미터 이하</li> <li>· 2.4~2.6제곱미터 이하</li> <li>· 2.7~3.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0.8제곱미터 이하</li> <li>· 0.9~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3제곱미터 이하</li> <li>· 1.4~1.6제곱미터 이하</li> <li>· 1.7~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제곱미터 이하</li> <li>· 2.4~2.6제곱미터 이하</li> <li>· 2.7~3.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만원</li> <li>· 13만원</li> <li>· 19만원</li> <li>· 25만원</li> <li>· 30만원</li> <li>· 39만원</li> <li>· 45만원</li> <li>· 60만원</li> <li>· 79만원</li> <li>·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li> <li>· 5만원</li> <li>· 7만원</li> <li>· 9만원</li> <li>· 15만원</li> <li>· 20만원</li> <li>· 29만원</li> <li>· 35만원</li> <li>· 40만원</li> <li>· 49만원</li> <li>·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li> </ul>



위 령 사 항	과 태 료
<p>나. 현수막</p> <p>(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7제곱미터 이하</li> <li>· 3.8~4.4제곱미터 이하</li> <li>· 4.5~5.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제곱미터 이하</li> <li>· 6.1~8.0제곱미터 이하</li> <li>· 8.1~10.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p>(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7제곱미터 이하</li> <li>· 3.8~4.4제곱미터 이하</li> <li>· 4.5~5.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제곱미터 이하</li> <li>· 6.1~8.0제곱미터 이하</li> <li>· 8.1~10.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만원</li> <li>· 7만원</li> <li>· 9만원</li> <li>· 13만원</li> <li>· 15만원</li> <li>· 19만원</li> <li>· 25만원</li> <li>· 35만원</li> <li>· 45만원</li> <li>·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li> <li>· 5만원</li> <li>· 7만원</li> <li>· 9만원</li> <li>· 13만원</li> <li>· 15만원</li> <li>· 19만원</li> <li>· 25만원</li> <li>· 35만원</li> <li>· 45만원</li> <li>·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li> </ul>

위 반 사 항	과 태 료
<p>(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하</li> <li>· 1.1~2.0제곱미터 이하</li> <li>· 2.1~3.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7제곱미터 이하</li> <li>· 3.8~4.4제곱미터 이하</li> <li>· 4.5~5.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제곱미터 이하</li> <li>· 6.1~8.0제곱미터 이하</li> <li>· 8.1~10.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만원</li> <li>· 7만원</li> <li>· 9만원</li> <li>· 12만원</li> <li>· 15만원</li> <li>· 18만원</li> <li>· 25만원</li> <li>· 35만원</li> <li>· 45만원</li> <li>·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li> </ul>
<p>(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li> </ul>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장이하</li> <li>· 11~20장이하</li> <li>· 21장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당10천원</li> <li>· 장당15천원</li> <li>· 장당25천원</li> </ul>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장이하</li> <li>· 11~20장이하</li> <li>· 21장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당15천원</li> <li>· 장당20천원</li> <li>· 장당30천원</li> </ul>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장이하</li> <li>· 11~20장이하</li> <li>· 21장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당5천원</li> <li>· 장당10천원</li> <li>· 장당15천원</li> </ul>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장이하</li> <li>· 11~20장이하</li> <li>· 21장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당15천원</li> <li>- 장당20천원</li> <li>- 장당30천원</li> </ul>

위반사항	과태료
<p>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가. 30일 미만</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라.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마. 1년 이상 위반자</p> <p>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가. 연 1회 위반자</p> <p>나. 연 2회 위반자</p> <p>다. 연 3회 이상 위반자</p>	<p>· 15만원</p> <p>· 40만원</p> <p>· 70만원</p> <p>· 130만원</p> <p>· 240만원</p> <p>· 25만원</p> <p>· 45만원</p> <p>· 100만원</p>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번 경사 방향	⑲번 비 고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업 소 명	⑤전 화 번 호	⑥주 소	⑦옥외광고업등록번호	⑧종 류	⑨수 량	⑩규 격	⑪표 시 위 치	⑫표 시 기 간	⑬광 고 내 용	⑭준 공 일 자	⑮성 명	⑯주 소	⑰전 화 번 호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